

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귀하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

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☒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(처음)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

☐ 수급 상황 신고서 (2회차 이후)

이미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으므로
항에 대하여 신고합니다.

【어느 하나에 「√」를 하여 주십시오.】

・ 처음으로 취학지원금을 신청하는 분은 「신청서
(처음일 때)」에, 「√」를 하여 주십시오.

・ 지금까지 취학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던 분은 「신고
서 (2회차 이후)」에 「√」를 하여 주십시오.

(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, 양쪽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☒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☒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제출하고, 기입한 사실과
지급받게 한 경우에는,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
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확인한 후,
2곳에 반드시
체크 표시를
하여 주십시오.

(아래 빈칸에 학생 본인이 서명하여 주십시오.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. 기입 시에는,
별지의 「기입상의 주의」 및 「유의 사항」을 잘 읽은 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후리가나(읽기)	かながわ		こたろう	
학생의 성명	성	神奈川	이름	子太郎

학생의 생년월일	平成21 年 8 月 15 日			
학생의 주소	〒 231-0021 神奈川 都道府県 横浜 市区町村 中区日本大通り1000			
보호자 등의 전화번호	父090-0000-0000 母080-0000-0000			
보호자 등의 전자 메일 주소	XXXXXXXXXXXX@XXXXXX, XX, XX			
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	神奈川県立〇〇学校			

학생의 성명, 후리가나,
생년월일, 주소를 기재하
여 주십시오.

전화번호는, 낮 시간에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, 보호자 전원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전자 메일 주소는, 연락이 되는 것을 하나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없습니다.)

・고등학교 등 (수업 연한이 3년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.) 을 졸업 또는 주요한 자

・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 (정시제・통신제 등에 재학한 기간은, 그 월수를 1개월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월
수로 계산.) 이 통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한 자 (다만,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에 입학 (전입학) 한 날짜 등을 기재하여 주 십시오.			
①현 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	가나가와현립〇〇학교	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일	①고등학교 (전일제)
②과거에 다른 고 교 등에 재학하고 기간	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		학교의 종류・과정・학과
		~ 년 월 일 일 년 월 일 일	

【 2 .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】

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(개인번호카드 사본,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・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등) 또는 과세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다음 ①부터 ⑦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1) 다음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		① ~ ⑦ 중 어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	
①	☒	친권자 (부모) 2 명분 학생이 미성년 (18세 미만) 이며, 친권자 (부모) 가 2 인 존재하는 경우	
②	☐	친권자 1 명분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 또는 (나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다) ~ (라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 (친권자가,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는, ⑤부터 ⑦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	
		☐ (가)	친권자 중 1 인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정보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
		☐ (나)	·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인인 경우, · 친권자가 존재하지만,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친권자 중 1 인의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
		☐ (다)	친권자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
	☐ (라)	친권자 중 1 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	친권자가 없고,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, 그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③	☐	미성년후견인 ☐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,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분. 다만, 미성년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합니다.)	
④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 (이하 「주된 생계 유지자」라 함) (부모 등) 2 명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	
⑤	☐	주된 생계 유지자 1 명분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 또는 (나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다) ~ (라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	
		☐ (가)	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정보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
		☐ (나)	· 학생이 미성년이지만,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·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으나,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가 1 인이었던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		☐ (다)	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부모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☐ (라)	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	
⑥	☐	학생 본인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나)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	
		☐ (가)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
	☐ (나)	·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, 성인에 달한 경우 · 미성년이지만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등	

(2) 다음 이유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 (첨부하지 않는 서류가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나) 또는 (다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⑦	☐	(가)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전원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, 개인번호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	
	☐	(나)	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 (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) 이지만, 미성년이어서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	
	☐	(다)	친권자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	

보호자 등 (소득 확인 대상자) 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,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은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(⑦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 ~ 6 월인 경우에는, 그 전년도 1월 1일 현재) 생활 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, 아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성명	학생과의 관계
(후리가나) かながわ たろう	
神奈川 太郎	父
생년월일	1975 年 6 月 6 日
☐ 생활 부조를 받고 있음.	

성명	학생과의 관계
(후리가나) かながわ はなこ	
神奈川 花子	母
생년월일	1977 年 3 月 31 日
☐ 생활 부조를 받고 있음.	

상기 보호자 등의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 ~ 6 월인 경우에는, 그 전년도 1월 1일 현재) 의 시구정촌까지의 주소 (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,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神奈川	都 道 府 県	横浜	市 区 町 村
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.			

神奈川	都 道 府 県	横浜	市 区 町 村
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.			

※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 조정 공제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, 시정촌민세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

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분의 2026년(레이와 8년)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【 3 . 확인 사항】 (다음

☐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함과 동시에,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에 제출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확인한 후,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학교 접수일 년 월 일 (학교에서 기입.)

년 월 일

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귀하
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

- 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(처음일 때)
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(이하 「취학지원금」이라 합니다.) 의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- ☐ 수입 상황 신고서 (2 회차 이후)
이미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으므로,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하여,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 사
항에 대하여 신고합니다.
(위의 두 개의 □ 중,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, 양쪽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- ☐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- ☐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제출하고, 취학지원금을
지급받게 한 경우에는, 부정 이득의 징수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
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(아래 빈칸에 학생 본인이 서명하여 주십시오.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. 기입 시에는,
별지의 「기입상의 주의」 및 「유의 사항」을 잘 읽은 후 기입하여 주십시오.)

후리가나(읽기)			
학생의 성명	성	이름	

학생의 생년월일	년 월 일
학생의 주소	〒 도도 부현 시구 정촌
보호자 등의 전화번호	
보호자 등의 전자 메일 주소	
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	가나가와현립○○학교

【 1 . 고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에 대하여】 (수입 상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)
※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학지원금의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・고등학교 등 (수업 연한이 3 년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.) 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
・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 (정시제・통신제 등에 재학한 기간은, 그 월수를 1 개월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
수로 계산.) 이 통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한 자 (다만,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)

①현재 다니고 있는 고 등학교 등의 재학 기간	학교명 가나가와현립○○학교	년 월 일 ~ 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	학교의 종류・과정・학과 ①고등학교 (전일제)
②과거에 다른 고등학 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기간	학교명	~ 년 월 일 일 (이 중 지급 정지 기간 등) ~ 년 월 일 일	학교의 종류・과정・학과

【 2 .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】

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(개인번호카드 사본,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·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등) 또는 과세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다음 ①부터 ⑦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(1) 다음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.		
①	☐	친권자 (부모) 2 명분 학생이 미성년 (18세 미만) 이며, 친권자 (부모) 가 2 인 존재하는 경우
②	☐	친권자 1 명분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 또는 (나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다) ~ (라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 (친권자가,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는, ⑤부터 ⑦까지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		☐ (가) 친권자 중 1 인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
		☐ (나) ·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인인 경우, · 친권자가 존재하지만,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친권자 중 1 인의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
		☐ (다) 친권자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	☐ (라) 친권자 중 1 인이 과세 기준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③	☐	미성년후견인 ☐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,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분. 다만, 미성년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합니다.)
④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 (이하 「주된 생계 유지자」라 함) (부모 등) 2 명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
⑤	☐	주된 생계 유지자 1 명분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 또는 (나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나) ~ (라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		☐ (가) 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를 지정받지 않은 경우
		☐ (나) · 학생이 미성년이지만,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·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으나,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가 1 인이었던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, 미성년 시점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		☐ (다)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, 부모 중 1 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며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 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
		☐ (라) 주된 생계 유지자 중 1 인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⑥	☐	학생 본인 (첨부 서류가 개인정보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나)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		☐ (가)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
		☐ (나) ·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, 성인에 달한 경우 · 미성년이지만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등

(2) 다음 이유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 (첨부하지 않는 서류가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인 경우에는 (가), 과세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(나) 또는 (다) 중 어느 하나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⑦	☐	(가)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전원이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, 개인번호를 지정 받지 않은 경우
	☐	(나)	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 (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) 이지만, 미성년이어서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
	☐	(다)	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,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,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

개인번호카드 사본 등 또는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(⑦의 □에 체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해당 연도 1 월 1 일 현재 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 ~ 6 월인 경우에는, 그 전년도 1 월 1 일 현재) 생활 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, 아래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성명		학생과의 관계
(후리가나)		
생년월일	년 월 일	
☐ 생활 부조를 받고 있음.		

성명		학생과의 관계
(후리가나)		
생년월일	년 월 일	
☐ 생활 부조를 받고 있음.		

상기 보호자 등의 해당 연도 1 월 1 일 현재 (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 ~ 6 월인 경우에는, 그 전년도 1 월 1 일 현재) 의 시구정촌까지의 주소 (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,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도	도	시	구
부	현	정	촌
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.			

도	도	시	구
부	현	정	촌
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.			

※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경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의 과세 소득액 (과세 표준액)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의 변경이나 이혼·사별,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,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.

【 3 . 확인 사항】 (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, □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)

☐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함과 동시에,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 설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학교 접수일 년 월 일 (학교에서 기입.)